



비과세하고, 장기간(최대 10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해외금융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정안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세제혜택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과세 제외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 (가입 기간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시기	공포일(1월 29일)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High Risk High Return, 국내채권도 분리과세하자

금융투자에 있어서 절세플랜의 기초는 가입 가능한 비과세상품으로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고, 이후 분리과세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소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비과세상품들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 이번 개정세법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의 가입기간 연장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① 비우량채권(BBB+ 이하)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45% 이상 편입하고 ② 국내자산에만 투자하고,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인별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15.4%) 해주며, 가입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다. ☞

Summary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명언은 투자 포트폴리오는 물론 절세 전략에도 해당된다. 금융투자의 세금 전략을 국내와 국외, 주식과 채권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를 할 때

국내주식(01)은 아차피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개정세법상 세제혜택 상품으로 담을 필요가 없다.



해외주식(03)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를 활용해 3,0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으면 되고,

국내채권(04)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활용해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능비과세통장인 ISA를 활용해 해외채권(02) + 해외주식(03) + 국내채권(04)을 골고루 담아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금융투자에 대한 절세준비는 다 마친 것이다.